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63
----------	------

2021년 7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김용석 의원 외 23명

나. 발 의 일 : 2021년 5월 27일

다. 회 부 일 : 2021년 6월 1일

라. 상 정 일 :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1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용석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방식임.
- 실제로 공공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재산세는 강남 2,560억원, 강북 175억원으로 14.6배 차이였지만, 공동과세 적용 후 2008년 재산세는 강남 1,570억원, 강북 332억원으로 4.7배 격차로 줄어들었음.

-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에 2020년 수입규모는 강남 6,512억원 강북 298억원으로 21.8배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공동과세분을 적용하더라도 강남 3,870억원, 강북 763억원으로 5배 이상 차이로 재정불균형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나.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3. 이송처

- 국회, 행정안전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건의안은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임.
- 국회에는 같은 취지로 이해식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임.

< 개정법률안 발의경과 >

의안	발의자	발의일자	회부일	상정일	소관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 등 13인	2020.12.31.	2020.12.22.	2021.5.12.	행정안전위원회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u>100분의 50</u> 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 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100분의 60과 100분의 40</u> -- ----- -----

<p>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 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p> <p>③ (생략)</p>	<p>-----</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	---

-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라 구세(區稅)로서 특별시·광역시 내의 자치구세로 규정되어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생략)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이하 생략)

-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산세 세입격차(최대 15배¹⁾)로 인한 재정불균형 상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구 「지방세법」 개정(2007.7.20.)을 통하여 2008년부터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區)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과세하여 이를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

※ 이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제정, 2011.1.1.)으로 이관 규정

1)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의 공법적 과제, 김남철,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31호, 2011. 9.

< 재산세 공동과세 추진경과 >

-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안(정부입법안, 1995.11.2) 무산
- 김근태의원(1996.12.6.), 이상수의원(2001.11.28.) 세목교환안을 발의하였으나 폐기
- 재산세 공동과세안 발의(김충환의원 2005.12.5.) → “공동과세” 결정(2007.7.)

구 지방세법 [시행 2007. 7. 20.] [법률 제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산세의 세수 격차로 인한 특별시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區)의 재산세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하여 공동과세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특별시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특별시 자치구(區)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한다)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하고, 특별시장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

-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각 자치구에서 징수한 총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제외)는 3조 7백억원으로, 서울시는 이 중 절반인 1조 5,35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징수한 후 이를 다시 각 구에 614억원씩 교부하였음.

< 서울시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균등)_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교부액	1,577,165	1,300,009	1,165,213	1,077,375	982,902

※ 연도별 추가 세입 정산으로 실제 회계연도별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액과 차이 있음.

- 재산세가 전액 구세라면 강남구 재산세 세입은 6,512억원, 강북구는 298억원으로 세입격차가 21.9배에 달하고 있으며,

-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재산세 세입액은 강남구 3,870억원, 강북구는 763억원으로 조정되어 세입격차가 5.1배로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2020회계연도 재산세 세입을 기준으로, 본 건의안을 적용하여 특별시분 재산세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상태의 완화 효과를 살펴보면,
 - 특별시분 재산세 규모는 현행(1조 5,350억원) 대비 20.0%(3,070억원) 증가한 1조 8,420억원 수준으로,
 - 이를 각 자치구에 736억 8천만원씩 균등 교부할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최종 재산세 세입액은 강남구 3,342억원(△528억원), 강북구는 856억원(증 93억원)으로 조정되어 세입격차가 현행 5.1배에서 3.9배(△1.2)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현행 공동재산세 제도에 따른 자치구 재산세 세입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최고 5배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재산세 세입의 절대적 규모 격차는 지속 확대되고 있는바,

< 재산세수입 관련 자치구 간 재정격차 추이 > (단위 : 억원)

비고	강남구	강북구	차액	배수
2018년도	2,869	610	2,259	4.7배
2019년도	3,400	689	2,711	5.0배
2020년도	3,870	673	3,197	5.1배

< 특별시분 재산세 제도에 따른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 실적 > (결산액 기준)

2018년도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7.7배(강남4,792억, 강북271억)에서 4.7배(강남2,869억, 강북610억)로 완화
2019년도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20.1배(강남5,712억, 강북284억)에서 5.0배(강남3,400억, 강북686억)로 완화
2020년도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21.9배(강남6,512억, 강북298억)에서 5.1배(강남3,870억, 강북763억)로 완화

- 이로 인한 서울시 내의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당초 재산세 총액에서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 될 경우 자치구 간 세수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자치구세인 재산세에 대하여 법에 의한 일방적인 상향 조정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침해 소지와, 세수가 대폭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의 반대 등 자치구 간 갈등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 자치구 전출금의 조정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을 수반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효과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재무국 검토의견 (세제과-7631, 2021.6.3.)

-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는 자치구 내에서 재원이 이전되는 문제이므로 자치구 간 협의가 필요한데, 강남구 등 세수가 대폭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치구 간 갈등 예상
-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며 자치구의 주요재원으로서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자치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한편, 본 건의안에 대한 시의원(김평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남구 제2선거구)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어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 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용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463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7일

발 의 자 : 김용석, 김경영, 김인호,
김제리, 김태수, 김희걸,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이영실,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최 선,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의원(24명)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방식임.

- 실제로 공공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재산세는 강남 2,560억원, 강북 175억원으로 14.6배 차이였지만, 공동과세 적용 후 2008년 재산세는 강남 1,570억원, 강북 332억원으로 4.7배 격차로 줄어들었음.
-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에 2020년 수입규모는 강남 6,512억원 강북 298억원으로 21.8배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공동과세분을 적용하더라도 강남 3,870억원, 강북 763억원으로 5배 이상 차이로 재정불균형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4. 이송처

- 국회, 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올해로 17년째를 맞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다시 방점을 찍으며,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지역균형 뉴딜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균형 발전에 집중하고 있지만 재정균형을 위한 노력은 지방소비세 소폭인상에 그치고 있을 뿐이며, 자치구간 균형발전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초(58.2%), 중구(55.3%), 강남(54.9%) 등 재정력이 높은 일부구를 제외하면 강서(21.9%), 관악(19.7%), 중랑(18.2%), 강북(17.2%), 노원(15.9%) 등 대부분 자치구는 10%~20% 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1년 알기쉬운 서울시 예산’ 따르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는 강남구, 서초구가 204.3%, 99.1%로 가장 높은 반면 강북구와 성북구가 57.0%, 51.5%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또한 재정력 차이는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자치구가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2021년 예산은 강남구가 292억원, 강북구가 72억원으로 4배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은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측면뿐 만 아니라 구민의 기초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자치구의 기본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민 전체의 균등한 후생증진을 위해 적정수준의 재정균형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재산세는 강남 2,560억원, 강북 175억원으로 14.6배 차이였지만, 공동과세 적용 후 2008년 재산세는 강남 1,570억원, 강북 332억원으로 4.7배 격차로 줄어들었다.

공동과세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전체 재산세 수입은 89.4% 증가('08년 1조 6,347억원→'20년 3조 961억원)하였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자치구별 재산세 수입규모를 더욱더 차이가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에 2020년 수입규모는 강남 6,512억원 강북 298억원으로 21.8배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공동과세분을 적용하더라도 강남 3,870억원, 강북 763억원으로 5배 이상 차이로 재정불균형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p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치구간 세수 격차를 해소하고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1. .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